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가단516808 사해행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구용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안순례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0. 11. 27.

판 결 선 고 2021. 1. 15.

주 문

1. C이 피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어음발행행위를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¹⁾ 및 피고는 원고에게 53,984,489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주문 제1항 기재 'C이 피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어음발행행위'는 구체적으로 'C이 2017. 7. 20. 피고에게 한 액면금 500,000,000원, 수취인 피고, 발행지 및 지급지 각 광주광역시, 발행일 2016. 3. 23., 지급기일 2017. 7. 20.로 된 약속어음의 발행행위'이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등

○ 원고는, ① 2015. 11. 16.경 D과 망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연대보증 아래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만 한다)에 200,000,000원을 변제기는 2016. 2. 15.로 하여 대여하였고, ② 2015. 12. 1.경 D과 망인의 연대보증 아래 F에 200,000,000원을 변제기는 2016. 4. 1.로 하여 대여하였다.

○ 망인은 2016. 3. 21.경 사망하였는바, 광주가정법원 2016느단1081호 상속포기 및 상속한정승인 사건에서 2016. 8. 30. 망인의 상속인 중 G, H, I, J의 상속 포기 신고를, 망인의 배우자인 C의 상속 한정승인 신고를 각 수리하는 내용의 심판이 있었다.

○ 한편 원고는 C 등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6가합59435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바, 위 사건에서 2017. 7. 13. C에 대하여 '원고에게 C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F, D과 연대하여 400,000,000원과 그중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3. 16.부터,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4. 2.부터 각 2017. 7. 13. 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이 선고되었고, 이 사건 판결은 2017. 8. 3.경 확정되었다.

나. C의 피고에 대한 약속어음 발행 등

○ 피고는 C의 아버지이자, 망인의 장인이다.

○ 망인과 C은, ① K에게 액면금 500,000,000원, 수취인 K, 발행지 및 지급지 각 광주광역시, 발행일 2014. 10. 20.,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② K와 사이에 2014. 10. 20. 위 약속어음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유한) L 증서 2014년 제1448호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 그런데 망인이 사망한 이후 피고는 2016. 3. 23. M조합에서 500,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같은 날 K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위 약속어음 및 공정증서에 따른 망인과 C의 K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

○ 피고는 C에게 위 대위 변제와 관련한 공정증서의 작성을 요구하였고, 이에 C은, ① 피고에게 2017. 7. 20.경 액면금 500,000,000원, 수취인 피고, 발행지 및 지급지 각 광주광역시, 발행일 2016. 3. 23., 지급기일 2017. 7. 20.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을 발행하였고, ② 피고와 사이에 2017. 7. 24. 이 사건 약속어음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유한) L 증서 2017년 제1003호로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배당절차의 진행 등

○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7. 8. 18. 광주지방법원 2017타채12551호로 C이 상속한 망인의 주식회사 N(이하 'N'이라고 한다)에 대한 예금 반환채권 등(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에 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는바, 위 사건에서 2017. 8. 22. 이를 인용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고 한다)이 있었고, 이 사건 전부명령은 2017. 9. 12.경 확정되었다.

○ 한편 원고도 이 사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8. 12. 11. 전주지방법원 2018타채36821호로 C이 상속한 망인의 N에 대한 이 사건 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는바, 위 사건에서 2018. 12. 13. 이를 인용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8. 12. 18.경 N에, 2018. 12. 31.경 C에

게 각 송달되었다.

○ 위와 같은 피고의 신청에 따른 이 사건 전부명령과 원고의 신청에 따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이 경합되자 N은 광주지방법원 2019년 금 제3395호로 압류채권액을 공탁하였고, 그에 따라 진행된 광주지방법원 O 배당절차 사건(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고 한다)에서 2019. 5. 16. 집행비용과 압류금지채권액을 제외한 나머지 53,984,489원이 피고에게 배당되었고, 원고에게는 아무런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라. 망인의 무자력 등

○ 광주가정법원 2016느단1081호 상속포기 및 상속한정승인 사건에서 C은 당초 망인의 적극재산은 합계 약 451,147,149원, 소극재산은 합계 약 1,042,610,420원이라는 취지의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하여 한정승인 신고를 하였다.

○ 그런데 이후 광주가정법원 2016즈기341호 심판결정 사건에서 C은 망인의 적극재산은 합계 약 401,810,195원, 소극재산은 합계 약 3,133,598,928원이라는 취지의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원고 청구원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어떤 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하려면 그 행위로 말미암아 위와 같은 상태가 초래되었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고, 이는 채무자가 처음

부터 특정 채권자로 하여금 채무자의 적극재산인 채권을 강제집행의 형식을 빌려 압류·전부 받게 할 목적으로 채무부담행위를 하고 그와 아울러 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고 채권자는 이를 이용하여 채무자의 채권을 압류·전부 받은 때와 같이, 실질에 있어 채무자가 자신의 채권을 특정 채권자에게 양도한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61618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위 기초 사실에 의하면, 망인의 상속인 지위에서 C은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 당시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 할 것이고, 나아가 위 기초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과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의 경위 및 시기, 이 사건 전부명령의 신청 경위 및 시기, 이 사건 배당절차의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상속인 지위에서 C은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형식을 빌려 피고의 망인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사실상 우선 변제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며, 그에 기하여 이 사건 전부명령이 행하여지기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의 원인이 된 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고 등 채권자를 해한다는 점을 잘 알면서 한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채무자인 C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인 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행위는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나. 이 부분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은 C이 망인의 상속인 지위에서 발행한 것이 아니라 본인의 지위에서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고유의 구상금 채무의 지급을 위해 발행한 것이므로,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행위는 망인에 대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기초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망인과 C이 K에 대하여 부담하는 합동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이므로 망인과 C 모두에 대하여 구상금 채권을 가진다고 할 것인 점, 피고와 C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C이 본인의 지위에서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고유의 구상금 채무의 지급만을 위해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실제로 피고는 C이 상속받은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이 사건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배당까지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나 주장하는 사정 등을 고려하더라도 C이 본인의 지위에서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고유의 구상금 채무의 지급을 위해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는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하는 위와 같은 취지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원상회복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사해행위인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은 53,984,48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이 상속받은 망인의 재산에서 망인에 대한 구상금 채권

을 변제받기로 하고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은 53,984,489원 등을 C에게 반환하였고, C은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망인의 채권자들에게 배당하기로 하였으므로, 원고에 이 부분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기의 일반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 행위를 취소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으로 회복시킴으로써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수익자가 채무자에게 사해행위로 인해 취득한 재산 전부를 반환하는 등으로 원물반환이 이루어진 것과 같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회복된 경우에는 사해행위의 취소 이외에 추가로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갑 제10호증, 을 제5 내지 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C이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이 사건 전부명령 이외에 광주지방법원 2016카단3455호로 채권가압류 결정을, 광주지방법원 2016카단3374호로 채권가압류 결정을, 광주지방법원 2017타채11274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전주지방법원 2019타채657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각각 받은 사실, ② 그에 따라 진행된 전주지방법원 P 배당절차 사건에서 2019. 5. 14. 5,527,633원이, 전주지방법원 Q 배당절차 사건에서 2019. 8. 27. 30,816,562원이 각 피고에게 배당된 사실, ③ 피고는 2020. 5. 21.경 이 사건 배당절차 및 위 ② 기재 각 배당절차에서 각각 배당받은 배당금 합계 90,436,796원(이 사건 배당절차에서의 집행비용과 전주지방법원 Q 배당절차 사건에서의 집행비용 포함)을 자기앞수표(R은행 S)로 C

에게 반환하였고, C은 2020. 8. 11. 한정승인절차 청산 대리업무를 위임받은 법무사 T의 계좌로 위 자기앞수표를 입금한 사실, ④ 법무사 T은 위와 같이 C으로부터 입금받은 자기앞수표의 수표금에 상당하는 돈을 상속재산(적극재산)에 포함하여 2020. 8. 12. 자 상속재산 배당표(1차)를 작성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사해행위인 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행위로 인해 취득한 재산인 배당금 전부를 C에게 반환하여 원물반환이 이루어진 것과 같이 채무자 C의 책임재산은 모두 회복되었다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로서는 피고를 상대로 사해행위인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행위의 취소 이외에 추가로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이와는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원인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상재

[별지]

어음발행행위

'공증인가 법무법인(유한) L 공증 담당 변호사 U 작성의 증서 2017년 제1003호 집행력 있는 어음공정증서' 작성의 원인이 된 소외 C의 피고에 대한 어음발행행위. 끝.